

# 참 고 자 료(3. 1998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자금지원안내)

I. 관련근거 : 통상산업부 공고  
1998-17(98.2.25)

1. 지원자금의 규모 및 조건

사업명	세 부 사 업	자금규모 (억원)	자금의 종 류	용자비율	이자율 기 간	매 출 한도액	해년도 지원한도액	용자 대상자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절약시설의 설치〉 · 산업체열병합발전 · 고효율 제품 생산 시설	1145	시설 및 운전자금	소요자금의 90% 단, 전력수요관 리, 폐에너지 회수설비, 요,로 및 노후보일러 개체, 지역에 너지개발사 업은 100%	연리 7%	3년거치 5년상환	-산업체 : 동일사업 자당50억원이내 -건물·수송 : 동일 사업자당10억원이 내(단, 건물열병합 및 폐기에너지 회 수시설은 35억원 이내) -지역에너지사업자 당50억원이내	· 집단에너지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허가 를 받은 자 · 전기사업법에 의한 열병합발전 허가나 신고를 득한 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한 에너지절약전 문기업으로 등록된자 · 에너지절약시설을 신 증설 또는 개체하고 자하는자(산업부문 에너지절약설비에 속 하는 설비는 대기업 은 개체에 한한다.) · 절약형설비를 대량 생산하고자 하는자 · 지역에너지:지방자치 단체 · 84.3.27이전 건축된 미단열주택 소유자				
	· 절약시설 설치 · 지역에너지 사업 · 전기대체냉방 시설		시설자금									
	· 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400	시설자금						소요자금 100%	연리 7%	5년거치 5년상환	동일 투자당 50억원이내
	2. 주택단열 개수사업	12	시설자금						소요자금 100%	연리 9%	3년거치 5년상환	1주택당 1,000만원이내
	소 계	1557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	1. 지역난방공급사업 - 신도시 지역난방	1460	시설자금	소요자금 의 100%	연리 9%	8년거치 7년상환						
	2. 공업단지 열병합 발전사업	320										
	소 계	1780										

○ 용자신청 :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부  
(TEL 0342-7106-294~6)

- 주) 1. 시설의 개체라 함은 동일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사업장을 이전할 경우는 폐기하는 기존시설의 대체에  
한한다)  
2. 전기대체 냉방시설은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총지원한도액은 10억원이내  
3. 집단에너지사업의 용자비율은 총시설투자비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각 사업별 초년도에 실용자비율  
을 별도로 책정하고, 자금운용상 전년도의 실용자 비율보다 낮게 융자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에 그 차이만을 추가한 비율로 지원할 수 있다.

II.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부(TEL 0342-7106-294~6)